

# 광주광역시서구의회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

## 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심사보고

####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 1998년 9월 23일 제출
- 나. 발 의 자 : 오광고 의원외 3인
- 다. 회부일자 : 1998년 9월 25일
- 라. 상정일자 : 제8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회기중  
제1차 운영위원회 (98년 10월 21일) 상정·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오광고 의원)

##### 가. 제안사유

- 광주광역시 서구청 행정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 나. 주요골자

- 제3조 제2항 제1호 중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 구정발전담당관, 총무과, 회계과, 지방세과, 구민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보건소”를 “기획감사실, 정보통신실, 총무과, 지방세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보건소”로 하고 동조동항 제2호 중 “사회복지,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청소행정과, 위생과, 지역경제과, 지역교통과, 건설과, 건축과, 지적과”를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경제과, 도시개발과, 교통과, 건설과, 건축과, 지적과”로 한다.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장재영)

- 지방의회나 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한 조사권·감사권의 행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관계공무원에게 질문하고 의견의 진술을 듣고 싶은 경우 관계공무원의 출석과 답변을 요구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법 제37조 제3항에서는 지방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하게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은 조례로 정하도록 포괄위임되어 있고, 광주광역시서구의회의 경우 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광주광역시서구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임.
- 개정조례안 제2조 제2호와 관련하여 현행 조례 제2조 제2호에서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구청장의 보조기관중 “실·국장, 담당관, 실·과장급”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서구청의 조직개편으로 18실·과·담당관제가 15실·과로 편제

되어 담당관제도가 폐지되었기에 개정조례안 제2조 제2호 같이 “실·국장, 과장급”으로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생각함.

- 다만 종전의 규정형식처럼 “실·국장, 실·과장급”으로 하지 않고 “실·국장, 과장급”으로 규정하고 있어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법적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함. 실·국장이라고 할 때의 실장의 직급은 국장과 동일직급의 실장을 의미하고, 과장급이라는 함은 과장과 동일직급의 실장 또한 당연히 포함되기 때문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사항 : 없음